

소송비용액확정신청

신청인 의료법인 한반도의료재단
 대표자 이사장 이범송

피신청인 허 **
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허철수, 모 김영희

인 지 : 금1,000원
송 달 료 : 금12,080원

대전지방법원 정읍지원

귀중



공증인가 韓 半 島
법무법인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
TEL : (02) 591-8787 FAX : (02) 594-6003

소송비용액확정신청

신청인 의료법인 한반도의료재단
전북 정읍시 000동 1000
대표자 이사장 이 범 송

소송대리인 法務法人 韓半島
담당변호사
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
(전화 : 02-591-8787, 팩스 : 02-594-6003)

피신청인 허 **(050000-4000000)
전북 정읍시 정읍동 000-00 000아파트 100동 5000호
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허철수, 모 김영희

신청취지

대전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가합10000 손해배상(의)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
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14,246,184원으로 확
정한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청원인



공증인가 韓 半 島
법무법인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
TEL : (02) 591-8787 FAX : (02) 594-6003

가.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가합 10000 손해배상(의)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소에서 피신청인은 패소하였습니다.

나. 이에 신청인은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--|----|
| 1. 판결문 사본 | 1부 |
| 1. 송달/확정증명원 | 1부 |
| 1. 세금계산서 | 1부 |
| 1. 영수증 | 1부 |
| 1. 소송비용계산서 | 2부 |

2009. 5. .

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

法務法人 韓半島

담당 변호사 이 범 성

이 용 환

박 정 근

정 창 래



공증인가 법무법인 韓 半 島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
TEL : (02) 591-8787 FAX : (02) 594-6003

김형균

김원탁

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

귀중



공증인가 韓 半 島
법무법인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
TEL : (02) 591-8787 FAX : (02) 594-6003

< 별지 >

소 송 비 용 계 산 서

금14,246,184원정

1. 1심 (소송물가액: 1,386,421,905원)

변호사보수액 : 금14,232,104원

산출내역: $[9,800,000 + (1,386,420,905 - 500,000,000) \times 0.005]$

송달증명인지 : 금500원

확정증명인지 : 금500원

2. 소송비용액확정신청

인 지 대 : 금1,000원

송 달 료 : 금12,080원

- 이상 -



공증인가 법무법인 韓 半 島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
TEL : (02) 591-8787 FAX : (02) 594-6003